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6호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사업비 지원을 정함(안 제5조).

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ychm1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총칭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공동체지원국장, 대변인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2.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제5조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비 지원

나. 추계 결과 : 총 1,000백만원(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확보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지속적 시비 확보 필요

5. 작성자 : 공동체정책과 행정9급 이어진

연도별 비용추계표

분야별	세부추진사업	소요예산(백만원)						비고
		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마을미디어 지 원	1.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비	800	160	160	160	160	160	
	2. 대행사업 인건비	200	40	40	40	40	40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비 및 인건비

○ 관련 조문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나. 추계 결과 : 공기관대행사업비 200백만원 / 년간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공기관대행사업비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작성자 : 공동체정책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어진

연도별 비용추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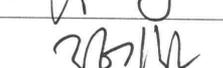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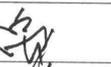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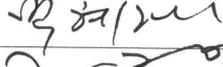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인건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경상비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의존 재원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대행사업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1차년도 : '20. 1월~12월까지 운영 및 비품구입비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서 명	비 고
1	권태권		
2	이종훈		
3	채계순		
4	유광영		
5	가보린		
6	박소성		
7	홍승원		
8	정기현		
9	우승훈		
10	우애라		
11	남진근		
12	박혜연		
13	유광영		
14	이광복		
15	손희영		
16			
17			
18			
19			
20			